



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 3. 23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, 2013. 3. 23., 타법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 (산업기술정책과) 044-203-4515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) 「산업융합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제2항에서 "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·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"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·연구
2.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·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
3.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
4.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

제3조(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)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정관 또는 사업운영 규정
 2.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[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]과 배치 계획서
 3.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,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부칙 <제1호, 2013. 3. 23.>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② 까지 생략

③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식경제부령"을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"지식경제부"를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"로 한다.

④ 부터 <63>까지 생략